

2001會計年度歲入·歲出 決算承認案

의안 번호	7
----------	---

제출년월일 : 2002. 7. 15.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地方自治法第125條 및 地方財政法施行令第38條의 規定에 의거 前年度 歲入·歲出 決算에 대하여 議會의 承認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歲入 決算 總括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148,861	169,586	150,860	18,726
일반회계		109,405	125,245	110,957	14,288
과목	지방세	19,249	22,756	20,044	2,712
	세외수입	31,737	44,251	32,675	11,576
	조정교부금	17,272	17,272	17,272	
	보조금	38,882	38,701	38,701	
	지방교부세	2,265	2,265	2,265	
	지방채				
특별회계		39,456	44,341	39,903	4,438
과목	의료보호기금	18,872	18,968	18,872	9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951	1,144	1,050	94
	주차장	7,102	11,702	7,463	4,239
	주거환경개선사업	2,650	2,757	2,748	9
	장립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2,200	2,089	2,08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681	7,681	7,681	

나. 歲出 決算 總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38,876	9,984	148,861	118,105	17,420	13,336	
일 반 회 계	100,059	9,346	109,405	93,998	9,745	5,662	
과 목	일반행정비	31,265	954	32,219	30,835	670	714
	사회복지비	55,331	6,648	61,979	54,109	6,480	1,390
	경제개발비	8,555	1,954	10,509	7,798	2,595	116
	민방위비	409		409	392		17
	지원 및 기타경비	4,499	△210	4,289	864		3,425
특 별 회 계	38,817	639	39,456	24,107	7,675	7,674	
과 목	의료보호기금	18,872		18,872	18,859		1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951		951	157		794
	주차장특별회계	7,102		7,102	2,568	400	4,134
	주거환경개선사업	2,253	397	2,650	1,479	1,079	92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1,958	242	2,200	943	408	8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7,681		7,681	101	5,788	1,792

3. 관계법령

地方自治法第125條 및 地方財政法施行令第38條

4. 덧붙임

2001.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2001년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반 및 특별회계

決算檢査意見書

沙下區決算檢査委員

目 次

I. 一般會計

1. 歳入分野

2. 歳出分野

II. 特別會計

1. 歳入分野

2. 歳出分野

III. 其他分野

IV. 最終意見

I. 一般會計

1. 歲入分野

(단위 : 천원)

區 分	歲入豫算現額	徵收決定額	收納額	不納缺損額	未收納額
前年度	104,300,095	117,903,739	104,430,201	1,081,737	12,391,801
當該年度	109,405,326	125,245,870	110,957,369	611,452	13,677,049

○ 歲入決算概要

收納額 110,957,369천 원은 豫算現額의 101.42%로서 1,552,043천 원이 超過收納되었으며,

徵收決定額 對 收納額의 比率은 88.59%로서 前年度 88.57%와 비슷하고,

不納決損額은 611,732천 원으로 이중 180,521천 원은 納付義務者의 無財産으로 430,931천 원은 時效消滅로 인한 것입니다.

收納額이 豫算現額을 超過하는 것은 效率的인 徵收活動의 結果 이겠으나, 반면 收入을 신중히 把握하여 豫算編成을 正確하게 할 必要가 있습니다.

○ 未收納額에 대하여

當該年度末 現在 未收納額은 13,677,049천 원으로 徵收決定額의 10.92%에 달하며, 前年度보다 1,285,248천 원이 增加되었습니다.

○ 收納額 決定

收納額は 金庫出納計算書상의 歳入總額과 一致하고 있습니다.

○ 經常的 稅外收入에 대하여

▷ 2000년도 收納額이 10,202,453천원에 比較하여 2001년도 收納額이 10,629,532천원으로서 427,079천원이 增加되었으며,

그 內容은 公有財産賃貸料, 쓰레기봉투판매 및 徵收交付金 收入이 큰 폭으로 增加한 結果입니다.

▷ 一般會計 歳入部分에서 經常的 稅外收入은 중요한 收入源중 하나이고, 一般的으로 正체되어 있는 歳入을 積極的인 歳入으로 轉換할 수 있는 唯一한 歳入源이며,

또한 努力 여하에 따라 歳入增大 및 福祉增進에 寄與할 수 있는 收入源이므로 새로운 收入源의 發掘등 經常的 稅外收入의 增大를 위하여 부단한 努力이 必要할 것임.

○ 滯納額 管理

滯納處分 全體에 대한 適時處分이 이루어지지 않아(調査書 內容 檢討結果 公簿上 財産照會 이외 어떠한 調査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結局 缺損處分되는 金額이 增加하고 있습니다.

業務의 適時性 增大, 滯納整理 專擔人員의 配置 또는 外部專門機關에 徵收用役依賴 등을 통해 缺損處分을 最小化하여야 할 것입니다.

2. 歳出分野

(단위 : 천원)

區 分	歳出豫算額	前年度移越額	豫算現額	支出額	移越額	不用額
前年度	93,028,239	11,271,856	104,300,095	86,658,400	9,346,523	8,295,171
當該年度	100,058,803	9,346,523	109,405,326	93,997,697	9,744,536	5,663,093

○ 歳出豫算概要

豫算額は 100,058,803천원이었으나 前年度 移越額 9,346,523천원을 합한 豫算現額は 109,405,326천원이었고

支出額は 豫算現額の 85.91%에 該當하는 93,997,697천원이었으며 移越額は 9,744,536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明示移越額 3,176,415천원은 公共勤勞事業, 廳舍第2別館 新築敷地 및 建物買入, 道路名 및 建物番號附與事業,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각종 道路開設 事業등을 위한 것이며,

事故移越額 873,998천원은 飲食物쓰레기 飼料化施設 建立, 未執行 都市計劃施設 再檢討用役, 각종 道路開設 事業등을 위한 것이며,

繼續費移越額は 西釜山文化會館 建立工事費 5,694,123천원으로 이는 그 동안 國家的인 어려움으로 인해 事業의 계속 推進與否가 不透明 하여 事業이 計劃대로 推進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歳出豫算 科目別支出에 있어

- ▷ 自律防犯隊員 運營費의 대부분이 夜間給食費로 支出되었는 바, 性格上 年中 고르게 執行되어야 함에도 年末에 全額 執行되었습니다.
- ▷ 過年度 滯納額徵收褒賞金 支給에 있어 區稅와 稅外收入이 根據 없이 差別 支給되고 있으며
- ▷ 追更豫算을 錯誤 記載함으로써 豫算이 超過配定되거나, 科目分類 誤謬로 인해 配定超過 支出이 發生되는 事例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豫算轉用 등

地方財政法 第38條 및 第39條 同法施行令 第34條의 規程에 의하여 2001會計年度 기간중에 豫算을 轉用한 것은 豫算現額의 0.16%인 7件에 172,877천원으로 1999년 8件 16,340천원 2000년 8件 101,582천원에 비해 增加하였습니다. 특히 住民自治센터시설비의 경우 轉用 制度가 濫用된 面이 있습니다.

○ 豫備費轉用に 대하여

豫備費使用額 중에는 매년 給與의 일부가 包含되는 바, 便法引上의 手段으로 豫備費가 使用된다는 誤解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豫算의 移越에 있어

- ▷ 公共勤勞事業費와 冬節氣 公共勤勞事業費의 경우 明示移越額이 총액에서는 承認範圍내에 해당되나, 事業內容별로는 過不足이 있으며
- ▷ 道路掘鑿費의 경우 단순히 豫算執行殘額을 明示移越하고 있는 바, 明示移越되는 事業內容을 明確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Ⅱ. 特別會計

1. 歲入分野

(단위 : 천원)

區 分	歲入豫算現額	徵收決定額	收納額	不納缺損額	未收納額
前年度	25,286,417	30,292,632	25,840,496	29,700	4,422,436
當該年度	39,455,469	44,340,828	39,902,894	24,280	4,413,655

○ 歲入決算概要

收納額 39,902,894천원은 豫算現額의 101.13%로서 447,425천원이 超過收納되었으며,

徵收決定額 對 收納額의 比率은 90.0%로서 前年度보다 4.7% 높아 졌는 바, 이는 駐車場特別會計의 收納率上昇에 기인합니다.

○ 未收納額

特別會計의 未收納額은 대부분 駐車場特別會計의 雜收入(駐車違反 過怠料)으로,

駐車場特別會計는 徵收決定額 11,702,329천원, 收納額 7,462,891천원 이며, 未收納額 4,239,438천원으로 그동안 해마다 增加해 왔던데 비해 當會計年度에는 小幅 減少한 바, 景氣回復을 機會로 未收納額의 大幅적인 減少를 위한 努力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不納缺損處分に 있어

處分事由가 全額 消滅時效完成에 의한 것으로 時間의 經過에 의하여 自動으로 整理되기를 기다리는 消極的인 姿勢보다 積極的인 判斷에 의하여 處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消滅時效 中斷을 위한 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입니다.

2. 歲出分野

(단위 : 천원)

區 分	歲出豫算額	前年度移越額	豫算現額	支出額	移越額	不用額
前 年 度	25,168,617	117,800	25,286,417	19,103,602	637,845	5,544,970
當該年度	38,817,624	637,845	39,455,469	24,107,106	7,675,361	7,673,002

○ 歲出豫算概要

豫算額は 38,817,624천원이었으나 前年度移越額 637,845천원을 합한 豫算現額は 39,455,469천원이었고
 支出額は 豫算現額の 62.1%에 해당하는 24,107,106천원이었으며,
 移越額は 7,675,361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明示移越額 7,640,972천원은 乙淑島 文化會館入口 公營 駐車場設置 400,000천원, 槐亭1地區住居環境改善事業 1,057,417천원, 長林1洞舍新築 396,000천원, 甘川1洞福社會館建立事業 5,787,555천원 이며, 事故移越額은 槐亭2地區 住居環境改善地區內 道路開設事業費 21,889천원이고, 繼續費移越額은 長林遊水池移設 및 公有水面埋立事業費 12,500천원 입니다.

○ 住民所得支援 및 生活安定基金의 融資金에 대하여

支出額이 157,300천원으로 前年度 支出額 86,000천원에 비해 增加 하였으나, 豫算額 800,000천원에 비해 支出額이 19.7%에 불과한 바, 果敢한 制度改善이 要求됩니다.

○ 長林遊水池 移設 및 公有水面埋立事業 特別會計에 대하여

長林1洞舍 新築費를 一般會計에서 支出하지 않고 特別會計에서 支出한 것은 特別會計의 使用目的을 恣意的으로 解釋한 側面이 있습니다. 그리고 明示移越 承認時 支出原因行爲額이 帳簿金額과 差異가 있는 바, 明示移越額 뿐만 아니라 關聯金額등에 대해서도 正確한 情報가 提供되어야 할 것입니다

Ⅲ. 其他分野

○ 公有財産増減 및 現在額 計算書

▷ 公有財産増減 및 現在額 計算書에는 決算年度末의 現在額과 決算期 동안의 増減額을 正確하게 表示하여야 하나 現在의 書類形式과 管理方法의 不完全으로 不正確한 管理가 每年 是正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現在의 行政自治部 指定 書類形式외에 다음과 같은 形式의 補助簿를 竝行管理하여 管理方式을 改善하여 주시기 바람.

재산종류	기초 현재액	증가 (취득원가)	감소 (장부가액)	평가차액	기말 현재액	처분가액	처분손익

▷ 公有財産總括臺帳上에 會計年度末 現在額을 集計한 표가 없고 일부 財産은 臺帳價格記載가 漏落되어 있는 등 決算書상의 現在額 數値의 正確性이 檢證되지 않고 있음.

○ 事業所稅

▷ 從業員割 事業所稅 課稅臺帳上에 課稅標準과 稅額이 正確히 記載 되어야 함에도 課稅標準이 記載 漏落되어 放置되는 경우가 빈번함.

▷ 財産割 事業所稅의 경우 汚染物質排出 事業所의 경우에는 重課稅 對象인 바 對象選定에 있어 다소 受動的이고 任意的임, 正確한 稅法상의 規定을 熟知하고, 關聯部署와의 有機的인 協調가 要望됨

○ 明示移越과 事故移越의 區分基準 設定

支出原因行爲가 이루어진 事業에 대해서도 明示移越로 議會의 承認을 받는 것은 豫算을 嚴格히 運用한다는 側面에서는 바람직하나 支出原因行爲與否가 明示移越과 事故移越의 區分基準이 아니라면 그 基準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財政狀態의 正確한 表示

區의 財政狀態를 正確히 表示하기 위해서는

▷債務現況中 영세민 전세자금 保證債務는 住宅銀行이 貸出하고 住宅信用保證基金이 保證한 것으로서 區에서 債務負擔할 可能性이 극히 稀薄한 偶發債務로서 財政狀態에 대한 誤解가 없도록 債務 統計에서 제외하고 다만 參考用으로 別途 表示하여야 할 것입니다.

○ 事業別 區分記帳

여러건의 事業이 동일 豫算科目에서 處理됨으로서 豫算統制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同一 豫算科目을 사용하더라도 事業 別로 區分해서 記帳할 경우에 豫算執行 · 統制 · 檢査가 보다 效率的 일 것입니다.

○ 歳入・歳出外 現金

▷ 歳入.歳出外 現金은 保證金, 保管金, 雜種金으로 區分管理하도록 되어있는데 施賞金を 雜種金에도 保管金에서도 管理되고 있는 점등은 改善하시기 바람.

▷ 返還期間이 經過된 뒤에도 返還請求가 없는 경우에는 自治區에 歸屬시키고 徵收官에게 歳入編入 要求를 하여야 하는바, 1996년 發生 契約保證金 1,550,000원, 1992년 發生 植樹保證金 3,660,800원 등은 歳入編入대상으로 推定되므로 再檢討하여 규정에 따라 處理하시기 바람.

IV. 最終意見

위에서 지적한 事項을 제외하고는

釜山廣域市 沙下區의 2001년 財政運營은 收支 均衡이 이루어졌으며, 長期的觀點에서 彈力的인 財政構造를 確保하기 위한 努力이 傾注되었습니다.

따라서, 釜山廣域市 沙下區의 2001년 財政運營은 適正하였다고 確認합니다.

2002年 5月 10日

釜山廣域市 沙下區

決算檢査 代表委員

金 在 榮



決算檢査 委 員

朴 炳 俊



決算檢査 委 員

李 斗 基

